

안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6
----------	-----

제출년월일 : '96. 5.
제안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안산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인근 시·군으로부터 편입된 지역을 포함시키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의 사육시 허가·변경허가, 가축사육관리 및 허가의 취소등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며, 이전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 강구.

□ 주요골자

○ 지금까지의 안산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는

- 기존 안산시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 일부사육제한 지역안에서의 가축사육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안산시 편입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제3조)
- 가축사육 허가시 구비서류, 사육관리 및 허가의 취소등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며(제5조 내지 제7조)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의 서식을 작성 사용하며 동장이 허가농가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할시 재정적 지원·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 강구(제18조)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로 하고, 동조 제3항 4호 중 "부업으로 1마리"를 "부업으로 5마리"로 하고 "5수 이하의"를 "25수 이하의"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폐수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4조 중 "가축사육을 제한다"를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영농을 위주로 하지 않는 인가"를 "주거"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가축사육 허가·변경 허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지 위치도

2. 사업계획서 및 사육시설 규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육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축종 또는 사육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축사육 허가신청시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위해 및 극심한 혐오감으로 환경의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축의 사육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장으로 하여금 이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일부 제한지역의 가축사육관리)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자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배설물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3. 기타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항

제7조(가축의 사육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육지 주변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8조(축사의 이전조치등) ① 시장은 이전·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지원·부지알선등의 대책만련을 축산장려 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경우 축산장려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별표1)의 일부제한 지역중 "자연녹지·생산녹지를 제외한 지역"에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을 삽입하며,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을 "준농림지역·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 일부제한 지역을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의 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u>폐기물관리법 제35조</u>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므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제한지역)①가축사육제한 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으로 <u>구분한다.</u></p> <p>②(생략)</p> <p>③(생략)</p> <p>1.~3. (생략)</p> <p>4. 농경용 및 농가의 <u>부업으로 1마리 이하</u>의 소, 말, 돼지와 <u>5수 이하의 가축류</u></p> <p>5.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p>	<p>제1조(목적)① .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p> <p>제3조(제한지역)① 구분하여, 제한지역은 <u>별표 1과 같다.</u></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부업으로 <u>5마리</u>. 돼지와 <u>25수 이하의</u>.</p> <p>5. 축산폐수의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p>
<p>제4조(제한지역 외의 지역)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u>가축사육을 제한다.</u></p> <p>1. (생략)</p> <p>2. 영농을 위주로 하지 않는 인가 밀집지역으로써 축산장려가 부적합한 지역</p> <p>3. (생략)</p> <p>(신설)</p>	<p>제4조(제한지역 외의 지역). <u>가축사육을 제한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주거 밀집 지역으로써</u>.</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가축사육 허가·변경 허가)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사의 청결유지</u></p> <p><u>2. 기타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항</u></p> <p><u>제7조 (가축의 사육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다.</u></p> <p><u>1.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u></p> <p><u>2. 사육지 주변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u></p> <p><u>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u></p>
(신 설)	<p><u>제8조 (축사의 이전 및 기타위해 제거 등) ① 시장은 이전, 기타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축산장려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산장려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u></p>
(별표 1)	<p>(별표 1)</p> <p>전부제한지역 :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p>

현 행	개 정 안
	<p><u>1. 사육지 위치도</u></p> <p><u>2. 사업계획서 및 사육시설 규모</u></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u></p> <p><u>2. 사육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u></p> <p><u>3. 축종 또는 사육면적을 변경하는 경우</u></p> <p><u>③ 시장은 가축사육 허가신청시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위해 및 극심한 혐오감으로 환경의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가축의 사육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p> <p><u>⑤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이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u></p> <p><u>제6조 (일부 제한지역의 가축사육관리)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자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u>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u></p> <p><u>2.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축</u></p>

한 행	개 정 인
<p>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p> <p>일부 제한지역 :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한 지역)</p>	<p>.....</p> <p>일부 제한지역 : <u>장상동, 장하동, 수암동</u> <u>화정동, 사사동, 진진동, 팔곡동(.....)</u></p>
<p>(신 설)</p>	<p><u>선감동, 대부복동, 대부남동, 대부동동,</u> <u>풍도동(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을 제외한</u> <u>지역)</u></p>
<p>(신 설)</p>	<p><u>(별지 제1호 서식) : 덧붙임</u></p>
	<p><u>(별지 제2호 서식) : 덧붙임</u></p>

(별표 : 1)

가축사육제한지역

구 분	동 명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일동 . 이동 사동 . 본오동 월피동 . 와동 성포동 . 고잔동 원곡동 . 목내동 원시동 . 초지동 성곡동	전 지역
일부제한지역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전건동 팔곡동	자연녹지, 생산 녹지를 제외한 지역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 풍도동	준농립지역, 농 립지역을 제외 한 지역

【 별지 제2호 서식 】

허가번호						
제 호	가축사육허가증					
상호(명칭)						
성명(사육자)				주민등록번호		
사육자소재지						
축사 및 가축 사육 두수	구분 축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건 평	계	성 축
허가조건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별지 제1호 서식 】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육장소재지							
사육기간	사육개시일자				사육종료일자		
축사 및 사육두수	축 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연건평	계	성 축	자 축
변경 내용	변경일자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하여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 : (인)(날인 또는 서명)

안 산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육지 위치도 1부
3.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도 1부.